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2015. 4.

중 소 기 업 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운영체계	2
제3장. 사업의 선정 및 변경	4
제4장. 사업의 수행 및 관리	6
제5장. 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8
제6장.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9
부 칙	12
별표 제1호. 전시회 평가표	13
별표 제2호. 수출상담회 평가표	14
별표 제3호. 인프라활용 평가표	15
별표 제4호. 신흥시장진출 평가기준	16
별표 제5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한도	17
별표 제6호. 참여기업 평가기준(표준)	20
별지 제1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신청서	21
별지 제2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변경신청서	26
별지 제3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변경요청 검토결과서	27
별지 제4-1호.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28
별지 제4-2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9
별지 제5호.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사업신청서	30
별지 제6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결과보고서	34
별지 제7호.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결과보고서	39
별지 제8호.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표준협약서	41
별지 제9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4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한다.

2015. 4. 16.
중소기업청장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말한다.
3. “주관기업”이란 동반진출 세부사업(이하“세부사업”이라 한다)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세부사업을 신청하여 관리기관□주관기업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네트워크 활용사업”이란 주관기업이 해외에 기 진출하여 구축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한류행사 연계 판촉행사 등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6. “인프라 활용사업”이란 주관기업이 해외에 기 진출하여 구축한 거점□유통망 등을 활용한 제품판매활동, 마케팅 활동, 전시□사무□물류공간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부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재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8. “보조사업 수행기관”이란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말한다.
9.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재교부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을 말한다.
10. “간접보조사업자”란 세부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기업을 말한다.

제 2 장 운 영 체 계

제3조(심의조정위원회) ①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수정
2.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수정□변경
3. 세부사업의 지원시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사항
4.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장 또는 중소기업 협력재단 경영협력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장
2. 중소기업 협력재단 경영협력본부장
3.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서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장 또는 중소기업 협력재단 경영협력본부장이 위촉한 자

4. 그 밖에 수출지원에 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교수□기업대표 등) 중에서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장 또는 중소기업협력재단 경영협력본부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또는 관리기관의 필요에 따라 상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2.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3. 세부사업의 접수□선정과 관리, 예산의 집행□정산
4. 그 밖에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주관기업의 업무) ① 주관기업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사업 계획의 수립
2. 참여기업의 모집□선정□관리 및 사업비 집행
3. 세부사업의 결과□성과 보고 및 참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 등

② 단,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주관기업이 아닌 관리기관에 사업비 집행 및 사업성과 보고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참여기업의 업무) 참여기업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이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 사항에 적극적인 협조
2. 세부사업 종료 후 결과□성과지표를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

제 3 장 사업의 선정 및 변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위원회는 매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규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중소기업청장이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 공고 이후 수시로 신청·발생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세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일정·절차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정) 관리기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총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운영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10조(세부사업의 신청·접수) ① 주관기업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신청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업 운영계획의 평가) ①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이 신청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에 대해 별표 제1호 부터 별표 제4호까지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은 세부사업 운영계획의 수립시 기존 거래가 없던 중소기업, 수출초보기업, 지방중소기업 등 참여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세부사업 운영계획의 평가시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에 부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진출을 목적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한 투자재원 기금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업의 선정) ①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지원할 세부사업을 선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및 참여기업의 다양성 등
2. 진출지역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
3.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또는 정부정책에 따른 필요사업의 경우 예산을 별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할 세부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세부사업의 목록과 계획 등을 중소기업청에 연 1회 보고하되, 수시로 선정한 세부사업은 분기별로 보고한다.

④ 관리기관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기업의 추진실적,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수, 간접보조금 규모 등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정·변경한 내용을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관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한 주관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및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주관기업의 계획변경) ① 세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은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별지 제2호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변경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평가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단, 해당 세부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기업은 세부사업의 추진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의 변경요청 검토결과서를 주관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및 취소내역을 분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기준) ① 관리기관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기업에게 별표 제5호를 기준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 주관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일괄정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협의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보조금을 별표 제5호의 기준과 달리 교부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16조(참여기업 모집) ① 주관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참여기업의 모집계획과 선정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이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참여기업을 모집·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업은 별표 제6호의 참여기업 평가기준 표준을 참고하여 신청기업을 평가·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속하게 참여기업에 공개하고, 관리기관에 선정결과와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별지 제4-1호와 별지 제 4-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실시 및 변경) ① 주관기업의 사업기간, 세부목표, 주요일정, 소요예산 등 시행내용은 기 제출한 별지 제1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은 제15조를 참조하여 시행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관기업은 세부사업 1건당 참여기업 5개사 이상을 모집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및 제14조의 변경절차를 거쳐 참여기업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주관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네트워크 활용사업) ① 네트워크 활용사업에 필요한 장치·운송업체 등은 중소기업자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주관기업은 장치·운송업체 선정기준과 선정사유 등을 복수견적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전시회와 수출상담지원의 보조금은 KOTRA 단가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업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별도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인프라 활용사업) ① 인프라 활용사업은 동일 주관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한해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 거점을 활용하는 경우 참여기업이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마케팅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외 유통망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교육단계, 진출단계, 사후마케팅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해외 TV홈쇼핑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은 관리기관에서 제정한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⑤ 해외 TV홈쇼핑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은 별지 제5호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신청한다.

제20조(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책임) ① 주관기업은 파견국가 내 해외공관, KOTRA 해외무역관, 해외민간네트워크, 수출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신의와 성실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진출효과·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에 참여하며, 사업성과 제고 및 동반성장 달성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중간점검) ① 관리기관은 세부사업의 추진현황 및 간접보조금 사용 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세부사업의 계획대비 추진실적
2. 간접보조금 관리 및 집행내역 등 적정성 여부
3. 운영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등

② 중간점검은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담당자, 전문위원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성과평가지 반영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중간점검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해당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제22조(결과보고) ①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파견결과 보고서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송부하고 참여기업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기업이 제출하는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액, 상담건수, 수출계약액 등
2.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의 경우, 방송횟수, 방송 판매실적 등

③ 해외홈쇼핑 방송 참여기업은 첫 방송 후 30일 이내에 다음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의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결과보고서를 작성
2. 별지 제8호를 참고하여 TV 홈쇼핑사와 참여기업간 협약서 작성
3. 광고동영상 및 홈쇼핑방송 결과물 등을 우편으로 제출

제23조(만족도 평가)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45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 등 정성적 평가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일 기준

으로 1년간 2회에 걸쳐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따른 최종 수출실적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4조(성과분석) 관리기관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재사항) ①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정산서류 등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②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리베이트 요구, 탈세 등 사회적·도의적 문제를 일으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
3. 관리기관의 중간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무단으로 포기하는 경우
5.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제출을 6개월 이상 늦추는 경우

제 6 장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26조(보조사업자의 교육 실시)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지원기준) 관리기관이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제5호와 같다.

제28조(주관기업의 보조금 신청) 주관기업은 사업선정 이후 별지 제9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보조금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9조(관리기관의 보조금 교부 및 취소) ① 관리기관은 세부사업 간 접보조금의 50% 이내에서 개산금으로 사전에 교부하되, 주관기업 요청 시 보조금 전액을 사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세부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시까지 참여기업이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기업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기관 및 주관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타 사업비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이 동 지침 및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보조금 정산) ① 주관기업은 사업종료 후 50일 이내에 보조금 사용실적과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전 영수증, 송금 영수증
2. 통역원 사용 시 해당인력 신분증 사본, 연락처 등 관련 근거자료
3. 홍보물, 초청장, 신문광고 자료 각 1부
4. 위탁업체 사용 시, 위탁기간, 위탁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

5.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각종 영수증

6. 그외 세부사업의 예산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② 제1항 각호의 영수증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대조필 낙인을 찍은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보조금 사용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당초목적과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보조금 집행 내역이 동 지침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정산한다.

1. 당초 참가규모보다 적게 참가한 경우 실제 참가규모에 따라 정산
2. 당초 참가규모를 초과하여 참가한 경우 당초 보조금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3. 보조금에 대한 “은행이자”는 반납하되, 송금수수료가 은행이자를 상회할 경우에는 반납분에서 제외

④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제23조 제3항의 결과물을 관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은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한 그 결과를 참여기업에 통보하고 정산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관리기관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별표 제5호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및 이자 발생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협약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보조금 강제징수 등의 사항에 관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전시회 평가표

접수번호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대표자	

항 목		배점	평 점 등 급				평점	
1	계획내용의 충실성	20						
	1. 지원 중소기업 모집 및 운영계획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2. 전시회 운영 전담인력 수	10	10 3명 이상	8 2명	6 1명			
2.	주관기업 운영능력	30						
	1. 주관기업 자원 네트워크 활용도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2. 참여기업의 마케팅지원 계획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3. 파견규모	10	10 10개사 초과	8 10개사	6 10개사 미만			
3	신흥시장* 진출	15	A(15), B(12), C(8)					
4.	전시회 지명도 및 질적수준	4-1. KOTRA 전시회별평가	15	15 별3	13 별2	10 별1	8 없음	
		4-2. 전시회 자체평가	(전년도)전시규모	10	10 8만㎡ 초과	8 8만㎡ ~ 4만㎡	6 4만㎡ ~ 2만㎡	4 2만㎡ 이하
	(전년도)바이어수		10	10 5만 초과	8 4만 초과	6 3만 초과	4 2만 초과	
	5. 가점	1점 가점	-	· FTA 체결국 개최 여부				
	1점 가점	-	· 전시회 전 후 부대행사 개최여부					
총 계		100						

* 신흥시장 : [별표 제4호]의 기준에 따름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주관기업 운영능력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평가자 1	(인)	평가자 2	(인)	평가자 3	(인)
-------	-----	-------	-----	-------	-----

[별표 제2호]

수출상담회 평가표

접수번호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대표자	

항 목		배점	평 점 등 급				평점
1	계획내용의 충실성	30					
	1. 지원 중소기업 모집 및 운영계획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2. 중소기업 지원 예상성과 및 실현가능성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3. 상담회 운영 전담인력, 업무수행 경력	10	10 인력 O 경력 O	8 인력 O 경력 X	6 인력 X 경력 O	4 인력 X 경력 X	
2	계획내용의 이행가능성	30					
	1. 대기업의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업수행가능성	15	15 우수	12 보통	8 미흡		
	2. 사후마케팅 지원을 통한 성과제고방안	15	15 우수	12 보통	8 미흡		
3	신흥시장* 진출	20	A(20), B(15), C(10)				
4.	파견규모 (지원중소기업 수)	20	A(20) 15개사 초과	B(15) 10~15 개사	C(10) 5~10개사		
5. 가점	1점 가점	-	· FTA 체결국 개최 여부				
	1점 가점	-	· 수출상담회 전 후 부대행사 개최 여부				
총 계		100					

* 신흥시장 : [별표 제4호]의 기준에 따름

평가자 1	(인)	평가자 2	(인)	평가자 3	(인)
-------	-----	-------	-----	-------	-----

[별표 제3호]

인프라 활용 평가표

접수번호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대표자	

항 목		배점	평 점 등 급			평점
1	계획내용의 충실성	20				
	1. 지원 중소기업 모집 및 운영계획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2. 중소기업 지원 예상성과 및 실현가능성 (정량 정성목표)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2	주관기업 운영능력	40				
	1. 해외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업수행가능성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2. 수행단계별 주관기업 역할의 구체성 (사전단계, 진출단계, 사후마케팅 단계별)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3. 바이어 발굴 계획의 우수성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사업추진 준비사항 (업체 수요조사, 수출 인 허가, 사전협의 등)	10	10 우수	8 보통	6 미흡	
3	대기업 해외자원* 활용 및 진출국가 (자원 × 국가)	20	20 5 이상	15 3~4	10 1~2	
4	신흥시장* 진출	10	A(10), B(8), C(6)			
5	과제규모 (지원중소기업 수)	10	A(10) 10개사 초과	B(8) 8~10개사	C(6) 5~7개사	
6. 가점	2 점 가점		· FTA 체결국 개최 여부			
총 계		100				

* 자원 : 대기업의 해외지사, 사무 전시 물류공간, 인력, 네트워크 등 현물 및 현금

* 신흥시장 : [별표 제4호]의 기준에 따름

평가자 1	(인)	평가자 2	(인)	평가자 3	(인)
-------	-----	-------	-----	-------	-----

[별표 제4호]

신흥시장 진출 평가 기준

A : 미진출 국가(수출증가율 0.5%미만)

B : 일부 진출(수출증가율 1%미만)

C : 보편적(수출증가율 3%이하)

등급	권역별(예시)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A	우즈베크, 캄보디아, 미얀마,몽골	-	벨기에,체 코,스웨덴, 스위스	쿠웨이트, 수단,오만	칠레,페루, 아르헨티나 파나마	전체 국가	뉴질랜드, 팜,피지
B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캐나다	이태리,영국, 네덜란드, 터키,프랑스, 스페인 등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브라질	-	마셜아일 랜드
C	중국,일본, 홍콩,베트남 대만,인니, 태국,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	독일, 러시아,	이란,UAE 사우디	멕시코	-	오스트레 일리아

[별표 제5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한도

< 해외 전시회 >

진출유형	지원한도	항목별 지원기준
해외전시회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p>□ 부스임차료 : 업체당 1부스 이내 임차료의 50% (전시회에 따라 최대 3부스까지 지원)</p> <p>* 1부스당 최대 12㎡까지 인정하되, 초과부분은 50%이내 지원 (1부스당 27㎡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지원에서 제외)</p> <p>* 임차료에는 보험료, 등록료 등 포함</p> <p>□ 장치비 : KOTRA 전시회별 산정금액의 50%</p> <p>* 보석, 화장품, 공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까지 지원</p> <p>□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100% 지원 (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p> <p>* 1CBM(Cubic Meter) :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p> <p>* 참가업체가 직접 운송할 경우, 추가 운임비 일부(1CBM,편도,50%이내)</p> <p>* 항공운송료의 경우, 선박운송경비'에 준하여 지원</p> <p>□ 홍보부스(공동홍보부스에 한함)</p> <p>- 임차료 : 1부스이내(최대 12㎡까지 인정, 100%)</p> <p>- 장치비 : 100% (kotra 지역별 단가 적용)</p> <p>□ 운영비용</p> <p>- 통역지원 : 5업체당 1인(KOTRA지역별 단가 적용)</p> <p>* 비영어권 국가(공용어 사용국 제외)는 3업체당 1인</p> <p>- 안내요원 지원 : 1인(KOTRA지역별 단가 적용)</p> <p>- 홍보비(홍보물제작 등) : 업체당 30만원 이내(정액제)</p> <p>- 회선 임차료 : 인터넷 2, FAX 1</p> <p>□ 현지 간담회비 : 업체당 5만원 한도 내 지원</p> <p>□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50만원 이내(전시회 1회 기준)</p> <p>□ 전시와 연계한 컨퍼런스 등 부대행사 개최비 : 업체당 50만원(전시회당 최대 10백만원) 이내</p> <p>* 한류행사 연계전시 및 기업간 자체전시회 등 전시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심의에서 승인된 내용인정(소요비용의 50%이내)</p>

* 국내전시회의 경우 해외전시회 기준한도를 준용하여 지원

* 불가피한 사유로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시장 개척 단 >

진출유형	지원한도	항목별 지원기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의 시장개척단 지역별 기준단가표의 범위 내에서 아래 항목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장, 장치 및 현지 차량임차료 - 바이어 섭외비 등 - 통역비 및 광고비, 기업 IR비용 등 -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50만원 이내 □ 세미나, 포럼, 로드쇼 등 바이어 초청 행사 및 선진 수출 시스템 벤치마킹 등 : 업체당 50만원(시개단 당 최대 10 백만원) 이내

- * 국내시개단 및 국내수출상담회의 경우 해외 시장개척단 기준한도를 준용하여 지원
- * 불가피한 사유로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해 외 인 프 라 활 용 >

구 분	지원한도	항목별 지원기준
거점 및 유통망활용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거점 활용 : 동일 주관기업에 대해 최대 3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사무공간, 전시공간, 물류공간 등 공간지원, 마케팅비용 및 운영비 등 총사업비의 일부 지원 - 1차년도 60%, 2차년도 40%, 3차년도 30% 지원 □ 해외유통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업체선정 및 판촉, 장치비, 운송(통관 등), 홍보비, 기타 운영비 등 총사업비의 60% 지원 * 판촉사원은 1업체당 1명 기준지원 * 운송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편도지원 □ 해외홈쇼핑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제품현지화(디자인 개선 등), 동영상 제작지원 등 총사업비의 60% 지원 * 단,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의 경우 업체당 25백만원 이내 지원가능 □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비용 : 업체당 5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료(외부강사), 임차료, 인쇄비 등 * 단, 1회 교육당 10백만원 이내 지원 가능 □ 기타 대기업 제안과제에 대한 심의에서 승인된 비용 (단, 총 소요비용의 60%이내에서 지원)

- * 불가피한 사유로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별표 제6호]

참여기업 평가기준 (표준)

항목 및 배점	세부항목	배점기준	점수
수출실적 (20)	3년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 미만	20점	
	“ 10 ~ 100만불 미만	15점	
	“ 100 ~ 500만불 미만	10점	
	“ 500만불 이상	5점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0)	- 동반진출 지원사업 1회 이하 참여	10점	
	- 동반진출 지원사업 2회 이상 참여	7점	
	- 동반진출 지원사업 3회 이상 참여	5점	
참가업체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 해외유명규격인증 -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좌측 항목 중 7개이상 : 25점 5개이상 : 20점 3개이상 : 15점 1개이상 : 10점 해당없음 : 5점	
수출준비도 (25)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또는 카다로그 보유 - 해외영업 전담부서가 별도 설치 운영 -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해외영업 전담자를 보유 -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지원사업 참여경험여부 - 해외전문광고지 게재 등 홍보실적	좌측 항목 중 5개이상 : 20점 3개이상 : 15점 1개이상 : 10점 해당없음 : 5점	
경영□기술혁신성 (20)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 - 정부시행 경영, 기술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이수한 기업(최근 2년 이내) -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업 (최근 3년 이내) - 지방□여성기업, 비회원사, 사회적기업, 녹색성장 기업, 연수인증업체	좌측 항목 중 5개이상 : 20점 3개이상 : 15점 1개이상 : 10점 해당없음 : 5점	
합계			점

【 별지 제1호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신청서 (주관기업용)

사 업 명					
행 사 명	ex)전시회명칭 또는 수출상담회 명칭 등 세부행사내용 기입 등				
주 관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책 임 자		
			연 락 처	Tel	
				E-mail	
		M.P			
(주 소)					
총 사업 기간 (행사 기간)	20 ~ 20 (개월)				
사 업 개 요 (행사 개 요)	참여 기업수	00개사	진출 국가	국가(도시)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천 원)	정부 지원금		기업 부담	계	
협력대기업 또는 유관기관 등 참여여부					

상기와 같이 2015년도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운영계획서 1부.
 2.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청렴서약서 1부.
 3.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2015 년 월 일

대 표 이 사 : (인)

사 업 책 임 자 : (인)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귀하

※ 사용비 산정내역에 관한 근거서류는 신청 시 제출을 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정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일반현황

주관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연도		주생산품	
종업원수		매출액 (단위:천원)	직전년도
해외진출 현황 및 형태	ex)현황 : 00개국 진출 ex)형태 : 유통매장, 법인, 지사 등		

□ 제안내용

사업명		사업책임자 (소속부서)	홍길동 직책 (동반성장팀)
행사명			
수행기간	총 수행기간 : 20 . . . ~ 20 . . . (개월)		
사업비 (단위:천원)		투자재원 활용개요	출연금액 : 출연기간 : * 재단에 출연한 기업만 기재
동반진출 내용 요약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참여(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지원활동 등을 간략히 기술		

<p>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및 필요성 · 진출국가(도시) : · 주요품목 : · 사업기간 중 병행되는 행사 : · 특이사항
<p>참여기업 모집 및 관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모집방법, 일정,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방안 등
<p>달성목표 및 성과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 (ex : 수출액, 계약건수, 바이어 상담건수, 계약금액등, MOU체결건수 등) - 정성적(ex : 판로다변화 지원, 시장조사 및 현지정착 지원, 참여기업 만족도 등) · 목표에 따른 성과제시방법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재무성과 등 과제 완료 시 획득 가능한 유무형의 기대효과 기술

□ 예산계획

사업비 지출예산 명세서						
예산과목			지출	산출근거 (단위: 원)		
관	항	목				
네트워크 활용			984,737,080			
전시회참가			110,422,080			
		부스임차료		1. ○○○○ 가. ○○○○ 나. ○○○○	@22,072,000원*1식= 22,072,000 @61,050,080원*1식= 61,050,080	83,122,080 22,072,000 61,050,080
		부스장치비		1. □□□□ 2. □□□□ 3. □□□□	@2,000,000원*5식= 10,000,000 @500,000원*5식= 2,500,000 @250,000원*1식= 250,000	10,000,000 2,500,000 250,000
		전시운송료		1. ○○○○ 가. ○○○○ 나. ○○○○	@1,000,000원*1식= 1,000,000 @500,000원*1식= 500,000	1,500,000 1,000,000 500,000
		기타 마케팅비용		1. □□□□	@2,000,000원*5식= 10,000,000	10,000,000
수출상담지원			14,819,000			
		임차료		1. 상담장 임차 2. 차량임차	@상담일수*단가= @이용일수*단가=	5,619,000
		용역수수료		1. 통역료 2. 상담주선용역료	@상담일수*통역단가 *참여기업수 @	9,200,000
		해외마케팅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1. 인쇄비 2. 간담회비 3. 소모품비 4. 발송비		
		광고비		1. ○○○○	@1,800,000원*1식= 1,800,000	1,800,000
		대행수수료				총비용의 10%이내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활용			767,606,000			
		공간임차료		1. ○○○○	@180,500,000원*1식= 180,500,000	180,500,000
		장치비		1. ○○○○ 2. ○○○○	@100,000,000원*1식= 100,000,000 @3,000,000원*1식= 3,000,000	100,000,000 3,000,000
		운송 통관 관측비		1. ○○○○ 1. ○○○○	@447,106,000원*1식= 447,106,000 @10,000,000원*2식= 20,000,000	447,106,000 20,000,000
		대행수수료 현지화지원 (별지 0참조)		1. ○○○○ 2. ○○○○	@5,000,000원*1식= 5,000,000 @5,000,000원*1식= 5,000,000	5,000,000 5,000,000
기타비용			91,890,000			
		해외진출 교육 훈련		1. □□□□ 가. □□□□	@200,000원*50명= 10,000,000	10,000,000
				1. □□□□ 가. □□□□		총 사업비의 10%이내
지출총계			984,737,080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인건비, 국내 외 여비, 물품구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청렴서약서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업(이하 “당사”)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당사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② 당사는 지원금 일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③ 당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참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④ 당사는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관기업명 :

대표자 :

(인)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귀하

대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업 체 명	OOOOOO(대표자)	
사 업 책 임 자	OOOOOO(동반성장 팀장)	
사 업 기 간	20. . . ~ 20. . .	
총 사 업 비	₩000000000원	
변 경 유 형	사업책임자 변경()	
	사업비/사업비 비목 변경()	
	과제내용 및 운영방법 변경()	
	과제기간 변경(V)	
	기 타()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p>대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세부 사업의 변경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주관(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귀하</p>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사업신청서

1. 기업정보

	구분		1순위	2순위	
	진출희망국가				
기업명	(한글)	대표자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공장)				
회사설립일		전화번호			
주생산품목		홈페이지			
수출액('14년)	(천달러)	종업원수		(명)	
매출액('14년)	(백만원)	자본금('14년)		(백만원)	
회사소개	자유롭게 기재				
주요유통망 (국내외)	<input type="checkbox"/> 백화점,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대형마트, <input type="checkbox"/> 대리점, <input type="checkbox"/> 방문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출관련 벤더 유무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상세내역)				
	(00.00.00~00.00.00)				
우대사항	해외 지사 및 생산기지 보유여부 유() 무() 보유 경우, 진출지역(), ()				
	홈쇼핑 방송경험		국내()	해외()	
	기업의 수출실적 유() 무() 홈쇼핑사명 : 주요 수출국가()				
	자사 브랜드 보유 여부		유()	무()	
보유 경우, 브랜드명 ()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폰
대표자					
기업실무자					

2. 상품정보

홈쇼핑 판매 희망 품목	상품명(모델명)	* 해외홈쇼핑 판매를 희망하는 제품 1개 또는 1set
	상품개요/ 특징	- 재질 : - 용도 : - 특징 : - 경쟁제품 대비 장점 : ※ (작성요령) 상품 특징점을 중심으로 500자 이내 기술 하되 소재(재질), 상품구성, 상품규격, 상품특장점, 상품소 구점(컨셉), 타사제품비교 등으로 기술
	상품규격	* 사이즈(cm) 가로×세로×높이×두께

3. 상세정보

상품군 중분류	* 상품분류표 참고		상품군 소분류	* 상품분류표 참고	
가격 정보	상품구성				
	상품 가격 (VAT포함/원)	시 중 가	원		
		홈쇼핑 판매 단가(희망가)	원		
주요판매현황	유통채널(상세명)	판매기간	판매가격(원)	매출액(원)	반품을(%)
상품관련 특허,인증, 입상실험결과	* 희망진출국가에 기 취득인증이 있는 경우 명기 * 해외취득 특허, 인증, 시험성적 반드시 기재 *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진출국에 인증 허가가 필요한 경우 명기				

상품이미지

-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성실수행동의서 1부.
4. 상품소개자료 1부.
5. 관련 특허, 인증, 시험성적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2015. . . .

0000 기업 대표 : (인)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귀하

* 지원서 작성시 참고사항

□ 상품분류

상품군 중분류	상품군 소분류
디지털/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지털기기/핸드폰
	컴퓨터/게임기/소프트웨어
생활가전	대형가전
	생활/소형가전
	주방가전
생활용품(주방/생활)	생활건강용품
	주방용품
식품	일반식품
	건강식품
화장품/미용기구/향수	화장품/미용기구/향수
가구/인테리어	가구/인테리어
의류/패션	의류
	패션잡화
	속옷
	침구/커튼
보석/시계/액세서리/장식	보석/시계/액세서리/장식
출산/유아/아동	출산/유아/아동
스포츠/레저	스포츠/레저/자동차용품
	악기/취미/문화/애완
	여행서비스/상품권

* 신청요건검토 결과, 지원대상 제외기업에게는 그 결과를 별도통지 하거나 서류를 돌려드리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별지 제6호 : 첨부 1 】

수행과제 최종(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
과 제 명			
동반진출 수행내용	1.		
	2.		
	3.		
	4.		
	5.		
	6.		
	7.		
	8.		
	9.		
	10.		
성과 및 우수사례			
수행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변경사항			
향후계획			

※ 구체적인 수행과정의 내용, 설명그림 등은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기타성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 별지 제6호 : 첨부 2 】

사업비 사용내역서

□ 비목별 총괄 (작성기준일 : 0000년 00월 00일)

(단위 : 원)

비 목	구 분	당 초 계 획	변 경 금 액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대비%)
1. 전시회 참가비용						
2. 수출상담회 지원						
3. 거점 및 유통망 활용						
4. 기타						
합 계						

【 별지 제6호 : 첨부 3 】

현지 활동별 사진

< Title >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결과보고서

1. 사업개요

- 국가 및 지역 : 중국(상해)
- 해외방송사 및 채널 : 동방 CJ (45ch)
- 방송일자 및 시간 : '13.6.17(월, 17:00~17:35), 6.18(화, 18:00~18:30)
- 방송횟수 및 시간 : 2회 방송, 25~30분/1회

2. 제품정보 (방송 또는 제품개선 등)

- 상품군 :
- 상품명 :
- 상품 이미지 컷 :

* 제품현지화 또는 디자인개선의 전후 사진첨부

선정 전	선정 후

3. 방송판매 성과

(단위: 세트, 원)

판매수량 (set)	판매단가 (set 기준)	총판매액

4. TV홈쇼핑 방송사진 (인서트 동영상 및 사후마케팅 포함)

5. 참가의견 및 건의사항

참가의견 :

건의사항 :

6.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총 제작비(0000 만원)		집행항목	집행금액	증빙서류
지원금	민간부담금			
0000만원 (60%)	0000만원 (40%)	동영상제작		

- [첨부] 1. TV홈쇼핑사와 중소기업간 협약서 사본 1부.
 2. 동영상 제작물 및 방송영상물 각 1부.
 3. 사후마케팅 활용자료(온라인 웹 캡처 또는 카탈로그 등)
 4. 지원금 집행내역별 증빙서류 각 1부.
 5.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표준협약서

- 국내 TV홈쇼핑사와 중소기업간 -

□ 협약기간 :

□ 협약당사자

주관기업 : (기업명) (대표자) (이하 '주관기업')

참여기업 : (기관명) (대표자) (이하 '참여기업')

대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장기과제인 「TV홈쇼핑 해외플랫폼 활용 중
기제품 수출지원사업」(이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은 국내 TV홈쇼핑사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을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TV홈쇼핑 채널에 중소기업 제품을 방송 판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수행)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
한다.

제3조(협력 및 지원)

① (주관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해외 TV홈쇼핑 방송채널 편성 및 판매지원

나. 해외 TV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위한 주관기업 인프라 제공

다. 참여기업 제품 판매 촉구를 위한 사후마케팅 지원

②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해외 TV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위한 상품준비 및 방송대응

나. 주관기업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

【 별지 제9호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 000 의 대표이사
신청자 주소	"주관기업의 주소"를 표기
사업목적	미국(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OO전시회 참가 (전시회 참가의 경우에 표기방법) 미국시장개척단(뉴욕, 디트로이트, 멕시코시티) 참가 (시개단 참가의 경우에 표기 방법) 대기업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동반진출 지원 (OO지역의 거점 및 유통망 등을 활용한 동반진출)
사업내용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홍보 부스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전시회 참가의 경우)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등 공통 경비를 지원(시장개척단의 경우) 대기업 거점 및 유통망 활용 등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인프라 활용의 경우)
보조사업의 경비 및 교부 보조금액	보조사업 경비 총 소요경비
	교부 보조금액 정부 지원결정 예산: 0000 원 사전 교부신청 금액: 0000 원
주 관 기 업 부 담 금 액	주관기업 부담금액 및 업체 부담금액을 별도로 표기 (투자재원 활용경우 협약서 첨부)
사업수행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첨 부 서 류	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계획서(변경내역 포함) 2. 통장사본(신규 개설) 3. 전시회 경우 장치비 및 운송비 복수 견적서 4. 참여기업 신청서 및 선정평가결과 5. 참여기업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사업장 중복일 경우 각각 제출)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주) 00000 대표이사 0000 (직인) </div>	